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023. 8. 28.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5호로 2023년 8월 11일 이순우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경비원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우월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변경)

나.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및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등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다.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강화(안 제4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본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8. 10.~ 2023. 8. 15.):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경비원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우월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본 조례의 적용 대상자를 공동주택 경비원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로 확대함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였고,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일부 정비하였으며,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입주자등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관리 노동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일부 정비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인권을 침해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 사항을 강화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최근 몇 년 사이 공동주택 경비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갑질”이 증가하고 그 행태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본 조례의 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경비원’에서 ‘관리 노동자’로 넓혀 법의 사각 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청장·입주자등의 책무 및 시정권고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6 (생략)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 14(생략)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6 ~ 21(생략)

② (생략)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